



바른사회시민회의 Citizens United for Better Society

@FactBrief

CUBS FACT BRIEF | 2016년 7월 19일 | 발행처 바른사회시민회의 | 발행인 전삼현 | www.cubs.or.kr

<국회의원 특권 시리즈 ①>

국회의원 특권이란?

-바른사회시민회의 정치실(이옥남)

국회의원 특권은 현재「국회의원 특권 200가지」로 포장되어 인터넷 매체와 SNS 등에서 통용되고 있다. 이 중 일부는 사실이 아닌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이에 국회사무처는 최근 관련 자료를 통해 국회의원 특권에 관해 잘못 알려진 부분을 바로 잡으려 시도했지만 여전히 왜곡된 내용은 널리 퍼지고 있다. 이처럼 국회의원 특권이 과장되어 세간에 알려진 이유는 국회의원의 반복되는 구태(舊態) 행위와 이에 따른 정치 불신이 가져온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특권의 사전적 의미는 ‘특정인(特定人) 또는 특정의 신분(身分)이나 계급(階級)에 속하는 사람에게 특별히 주어지는 우월한 지위나 권리’다. 따라서 국회의원 특권은 국회의원만이 누리는 권리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공항의贵宾실 및 fast lane 이용, 넓은 사무실 사용 등은 업무 편의 혹은 혜택(fringe benefit)이라고 볼 수 있다. 이는 행정부의 고위공직자에게도 제공되는 혜택으로 직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는 차원이다. 반면 특권은 국회의원만이 누릴 수 있는 것으로 ‘면책특권’, ‘불체포특권’ 등이 그 예라 할 수 있다(【표 1】 참조).

【표 1】특권과 편의의 구분(예)

구 분	편의(benefit)	특권(privilege)
급여(수당)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	편법 운영, 법률 개악, 세금 회피
출장	항공료, KTX 요금 지원	출장보고서 미제출, 외유성 해외출장(통제 無)
보좌진	인력 확대	선거 및 지역구 관리에 동원(탈법)
의원연금	제도 운영	기여 없이 지급받음(18대 국회의원까지)

※ 출처: 바른사회시민회의(2014. 2)

특권이 문제가 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법 앞의 평등(equality before the law), 차별금지, 사회적 특수계급 불인정 등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평등원칙을 법의 제정, 해석, 집행에 있어 차별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따라서 국회의원들이 법률 제정 시 자신들은 납세의 의무 등에서 면제하거나, 자신들에게는 법을 유리하게 해석하여 적용하는 것은 특권이라 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가 보는 평등의 원칙

평등의 원칙(헌법 제 11조)은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관한 우리 헌법의 최고원리로서 국가가 입법을 하거나 법을 해석 및 집행함에 있어 따라야 할 기준인 동시에, 국가에 대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불평등한 대우를 하지 말 것과, 평등한 대우를 요구할 수 있는 모든 국민의 권리로서, 국민의 기본권 중의 기본권이다(헌재 1989.1.25. 88헌가7, 판례집 1, 1, 2).

이 평등의 원칙은 일체의 차별적 대우를 부정하는 절대적 평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입법과 법의 적용에 있어서 합리적 근거 없는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상대적 평등을 뜻하며, 합리적 근거 있는 차별 내지 불평등은 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합리적 근거 있는 차별인가의 여부는 그 차별이 인간의 존엄성 존중이라는 헌법 원리에 반하지 아니하면서 정당한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고도 적절한 것인가를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한다(헌재 1994.2.24. 92헌바43, 판례집 6-1, 72, 75; 헌재 1998.9.30. 98헌가7등, 판례집 10-2, 461, 476).

※ 국회의원 특권 시리즈 ② 국민의 의무 분야에서의 국회의원 특권